



## 서 울 고 등 법 원

### 제 8 - 2 행 정 부

#### 판 결

사 건 2024누57264 지역자원시설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김○○  
피고, 피항소인 ○○시장  
제 1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2구합14433 판결  
변 론 종 결 2025. 3. 21.  
판 결 선 고 2025. 4.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19.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1 경정청구 내역 중 '㉔경정청구세액(원)'란 기재 각 지역자원시설세 합계 2,051,671,730원에 대한 경



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들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5행의 "2017. 12.경까지"를 "2020. 9.경까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4행의 "10,975,840,321kWh"를 "19,521,862,925kWh"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특히 원고는, 이미 1차 발전 과정에서 연소되어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된 화석연료의 폐열을 이용하여 하는 2차 발전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은 하나의 화석연료 연소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에서 발전량을 기준으로 과세 표준과 표준세율을 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 동일량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더라도 발전효



율을 높여 전력생산량이 증가할 경우 그에 비례하여 지역자원시설세가 증가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세법의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차 발전 및 2차 발전에 대하여 각각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마지막 행부터 제10면 제1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6) 원고는, 2차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하는 설비인 배열회수보일러는 1차 발전 설비와 물리적으로 구분되고, 독립적 역할을 하는 별개의 설비이므로, 2차 발전은 1차 발전과 별개의 발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각 발전 과정에 사용되는 에너지원(1차 발전의 경우 화석연료, 2차 발전의 경우 폐열)은 현행 에너지 관련 법체계상 별개의 에너지원으로 구별되어 취급되므로, 화석연료에 대한 이용 없이 재생에너지에 해당하는 폐열만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2차 발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차 발전에 사용되는 핵심 설비인 배열회수보일러는 그 자체로 1차 발전을 통해 발생한 열에너지를 회수해 다시 증기를 생산하고 생산된 증기로 터빈을 구동시켜 발전 효율을 올리는 데에 기여하는 장치로써, 1차 발전 설비와 물리적, 기능적으로 구분되는 별개의 설비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발전과 2차 발전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복합화력발전을 이루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비의 구분과 상관없이, 폐열을 회수하여 발전을 하는 경우에도 폐열의 발생 원인이 화석연료의 연소에 있다면 화력발전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발전 설비의 구분을 이유로 2차 발전이 '화력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2차 발전이 폐열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화석연료인 LNG를 연소시키지 않고 폐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복합 화력발전량 중 2차 발전 관련 허가량만 분리하여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하나의 화력발전으로 생산된 전력 중 일부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서 앞서 본 과세목적이나 입법취지상 타당하지 않은 점,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6조에서 "발전시설 용량이 시간당 1만 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문언상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라고만 규정할 뿐 "특정 공정에 의하여 생산된 전력"이라고 규정하지 아니한바, 1차 발전과 하나의 발전소 내에서 이루어져 전체적으로는 화석연료를 연소한 열원을 이용하여 생산된 2차 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별도의 근거를 찾기는 어려운 점 등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화석연료를 연소하여 발생한 폐열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2차 발전 역시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또한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드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9847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28684 판결 등)은 구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가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 공제대상인 에너지 절약시설에 관한 것으로서 복합화력발전설비에서 2차 발전 설비 부분을 1차 발전 설비 부분과 따로 떼어 별도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폐열 및 폐가스 이용설비' 내지 '에너지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여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 3. 결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08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조○○

판사      이○○

판사      정○○